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70 호

2018년4월12일(목)

여수시보

시정방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8-98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8-10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5  
(승인(신고)번호 제2018-16, 17, 18호)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8-867호 도로지정 공고(화양면 나진리 산185-4외) /6
- 여수시 공고 제2018-919호 사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서순천 18수용-0321호, 신역수18수용-0322호, 여천2차18수용0323호) /7
- 여수시 공고 제2018-92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4
- 여수시 공고 제2018-926호 2018년 여수시 농·수특산물 해외판촉 행사 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15
- 여수시 공고 제2018-927호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계획 /22
- 여수시 공고 제2018-93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변경 공고 /26
- 여수시 공고 제2018-936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7
- 여수시 광림동 공고 제2018-19호 2018년도 광림동 복지코디네이터 채용 공고 /29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2018-1329호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 여수시 조례 제2018-1330호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 여수시 조례 제2018-1331호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 여수시 조례 제2018-1332호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 여수시 조례 제2018-1333호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0
- 여수시 조례 제2018-1334호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 여수시 조례 제2018-1335호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5

회								
람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70 호

2018년4월12일(목)

여수시보

시정방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2018-1336호 여수만 연안 보전 이용 및 관리 조례안 /69
  - 여수시 조례 제2018-1337호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72
  - 여수시 조례 제2018-1338호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1
  - 여수시 조례 제2018-1339호 여수시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6
  - 여수시 규칙 제2018-683호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5
  - 여수시 규칙 제2018-684호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9
- [별표] 단위사무별 전결권 현황

회								
람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4.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여수시 공화동 14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광장)
  - 나. 명 칭: 박람회장 정문 앞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9,68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년월일: 2018. 4.(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나. 준공예정년월일: 2018.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8. 관계도서: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 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여수시 덕충동	2017	도	2,503	1,402	여수시	공유지			
2	여수시 공화동	1493	도	8,395	6,180	여수시	공유지			
3	여수시 공화동	2-17	철	6	4	여수시	공유지			
4	여수시 공화동	2-10	철	38	1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5	여수시 공화동	328	도	10	1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	여수시 공화동	327	전	14	14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7	여수시 공화동	327-2	전	1	1	여수시	공유지			
8	여수시 공화동	329	도	6	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9	여수시 공화동	330	전	18	18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10	여수시 공화동	330-2	전	1	1	여수시	공유지			
11	여수시 공화동	1-43	철	133	13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2	여수시 공화동	1-35	철	2	2	여수시	공유지			
13	여수시 공화동	1-37	철	2	2	여수시	공유지			
14	여수시 공화동	1	철	4	4	여수시	공유지			
15	여수시 공화동	1-33	철	182	182	여수시	공유지			
16	여수시 공화동	83-1	도	31	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7	여수시 공화동	51-1	도	5	2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18	여수시 공화동	53-1	도	68	2	국(기획재정부) 여수시 공화동	국유지 공유지			
19	여수시 공화동	325	도	60	6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0	여수시 공화동	332	도	79	7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1	여수시 공화동	340	도	20	20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2	여수시 공화동	341	도	7	7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3	여수시 공화동	352	도	168	53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4	여수시 공화동	1-2	철	2,972	66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5	여수시 공화동	54	도	10,091	6,867	여수시	공유지			
26	여수시 공화동	632	도	993	36	여수시	공유지			
27	여수시 공화동	573-2	도	110	35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8	여수시 공화동	1-40	철	10	10	여수시	공유지			
29	여수시 공화동	641-10	철	1	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0	여수시 공화동	1-41	철	2	2	여수시	공유지			
31	여수시 공화동	641-16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2	여수시 공화동	641-13	도	47	4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3	여수시 공화동	641-12	도	5	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4	여수시 공화동	575	도	10	8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35	여수시 공화동	641	도	51	1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6	여수시 공화동	1-44	철	64	5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7	여수시 공화동	1-36	철	49	34	여수시	공유지			
38	여수시 공화동	582	도	4,368	2,038	여수시	공유지			
39	여수시 수정동	352	도	8,752	1,651	여수시	공유지			
40	여수시 수정동	363	도	26	3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b>합 계</b>		<b>40필지</b>		<b>39,320</b>	<b>19,686</b>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18-16	2018.4.11.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18.4.10.	2018.8.31.	화양면 이목리 1108-9 지선 공유수면	선착장 정비
2018-17	2018.4.11.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18.4.10.	2018.6.27.	화양면 장수리 618-4 지선 공유수면	선착장 정비
2018-18	2018.4.11.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18.4.10.	2018.6.30.	소라면 사곡리 1067-10 지선 공유수면	맨손어업 작업장 진입로 포장

2018. 4.

여 수 시 장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185-4번지 외 1필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137.57	6	818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화양면 나진리 산185-4	111.15	6	659		
화양면 화동리 산27	26.42	6	159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12.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18- 919호

사 용 재 결 신 청 서 열 람 공 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서순천·154kV 여천·345kV 신여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관계인은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18. 4. 12.

##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154kV 서순천·154kV 여천·345kV 신여수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3. 열람기간 : 2018. 4. 12.~ 2018. 4. 26.(15일간)
4. 열람장소 및 의견서제출
  -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11)
5. 의견제출기간 : 2018. 4. 12.~ 2018. 4. 26.
  - ※ 기간내 미제출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6.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붙임참조
7. 기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지역협력부  
용지파트 ☎062-260-5723 이윤진

## 열람공고명세

○ 사업명 : 154kV 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일련 번호	수용토지의 표시		보상 대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1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306-2	도	강대*	(등)여천군울촌면상봉리25 (송)전남여수시울촌면상봉리25			
2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312-2	도	강영*	(등)여천군울촌면상여리38 (송)전남여수시울촌면상여리38			
3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206-3	도	김양*	(등)여천군울촌면반월리155 (송)전남여수시울촌면반월리155			
4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211-1	유	김영*	(등)여천군소라면사곡리215 (송)전남여수시소라면사곡리215			
5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506-1	답	김요*	(등)경상남도양산시북정로80(북정동) (송)경남양산시북정로80(북정동)			
6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산249-2	임	김용*	(등)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611중흥파크맨션205-1502 (송)전남광양시광양읍서평1길99,109-201(매화마을주공아파트)			
7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43-3	임	김용*	(등)강원도인제군인제읍남북리791-12 (송)강원인제군인제읍인제로112번길12			
8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산147-8	임	김유*	(등)경기도하남시춘궁동74-5 (송)서울노원구덕릉로73길28,202-1604(중계동,양지대림아파트)			
9	여수시 울촌면 산수리	255	잡	김은*	(등)서울양천구목동713-5외5필지상진오벨리-604 (송)서울양천구목동중양남로3가길127,104호(목동,상진지오벨리)	울촌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전남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262-2
10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681-1	전	김점*	(등)여천군소라면사곡리1015 (송)전남여수시소라면사곡리1015			
11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43-3	임	김종*	(등)여천군소라면덕양리715 (송)전남여수시소라면내기길12			
12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506-1	답	김종*	(등)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양덕동17길22,2동1008호(양덕동,경남아파트) (송)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양덕동17길22,2동1008호(양덕동,경남아파트)			
13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30-1	임	김진*	(등)여수시시전동243우미아파트101-206 (송)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로46-4(월영동)	국(여수세무서)	압류	전남여수시좌수영로 948-5(봉계동)
14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30-1	임	김진*	(등)여수시시전동243우미아파트101-206 (송)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로46-4(월영동)	여수시	압류	전남여수시시청로1 (학동)(세무과)
15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30-1	임	김진*	(등)여수시시전동243우미아파트101-206 (송)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로46-4(월영동)	여천군	압류	전남여수시시청로1 (학동)(세무과)
16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30-1	임	김진*	(등)여수시시전동243우미아파트101-206 (송)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로46-4(월영동)	윤수길	가등기	마산시합포구창포동3가1-19 경민아파트1207호
17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30-1	임	김진*	(등)여수시시전동243우미아파트101-206 (송)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로46-4(월영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3.15대로666(자격징수부)
18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210-1	유	문병*	(등)여천군소라면사곡리174 (송)전남여수시소라면사곡리174			
19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산87	임	박봉*	(등)여천군소라면사곡리174 (송)전남여수시소라면사곡리174			
20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43-3	임	박은*	(등)강원도인제군인제읍비봉로44번길62 (송)강원인제군인제읍비봉로44번길62			
21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산87	임	박주*	(등)여천군울촌면가장리150 (송)전남여수시울촌면가장리150			
22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산87	임	박주*	(등)여천군울촌면봉전리16 (송)전남여수시울촌면봉전리16			
23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1043-2	도	박홍*	(등)여천군울촌면산수리928			

					(송)전남여수시울촌면산수리928			
24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1942-8	답	소완*	(등)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수광로692 (송)전남광양시광양읍수광로692	광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0
25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457	답	손윤*	(등)전라남도순천시장선배기길77,501동1007호(조례동,부영아파트) (송)전남순천시장선배기길77,501동1007호(조례동,부영아파트)	순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전라남도 순천시 백연길 111 (조례동)
26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1045-2	도	손채*	(등)여천군울촌면가장리1158 (송)전남여수시울촌면가장리1158			
27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48-1	임	신신*	(등)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조산로187 (송)전남여수시소라면조산로187			
28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48-1	임	신신*	(등)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조산로187 (송)전남여수시소라면조산로187			
29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산183-1	임	심현*	(등)고양시일산구백석동1244-2 (송)경기고양시일산동구강송로87번길8-14(백석동)			
30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1111-2	도	양본**	(등)여천군울촌면가장리1131 (송)전남여수시울촌면가장리1131			
31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1111-2	도	양원**	(등)여천군울촌면가장리1127 (송)전남여수시울촌면가장리1127			
32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1045-2	도	양한*	(등)여천군울촌면가장리1131 (송)전남여수시울촌면가장리1131			
33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30-1	임	여천시	(송)전남 여수시 학동 100			
34	여수시 울촌면 산수리	1113-4	도	위성*	(등)여천군울촌면산수리1250 (송)전남여수시울촌면산수리1250			
35	여수시 울촌면 산수리	산200	임	유*	(등)서울도봉구창동26동아아파트7동1407호 (송)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원로82번길30,1307동-1404호(운중동,산운마을)			
36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206-3	도	이덕*	(등)서울강동구마천동114-26 (송)서울강동구마천동114-26			
37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206-3	도	이몽*	(등)여천군울촌면반월리155 (송)전남여수시울촌면반월리155			
38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211-1	답	이병*	(등)여천군울촌면반월리282 (송)전남여수시울촌면반월리282			
39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287	전	이병*	(등)여천군울촌면반월리282 (송)전남여수시울촌면반월리282			
40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206-3	도	이숙*	(등)송주군해룡면호두리888 (송)전남순천시해룡면호두리888			
41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206-3	도	이순*	(등)부산광역시동래구장전동24-1 (송)부산동래구장전동24-1			
42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502-11	답	이영*	(등)서울동작구상도동299-103 (송)인천남구석바위로102-1102동701호(주안동,한뫼위너스)			
43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206-3	도	이운*	(등)여천군울촌면반월리155 (송)전남여수시울촌면반월리155			
44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130-5	도	이정*	(등)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월호리150 (송)전남여수시화정면월호리47-1			
45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206-3	도	이채*	(등)여천군울촌면반월리155 (송)전남여수시울촌면반월리155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311 (염리동)(구리지사)
46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287	전	이평*	(등)서울강남구개포동185주공아파트604-701 (송)전남여수시울촌면득실길11-11			
47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1432-3	전	이홍*	(등)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와룡길33,706동1003호(광양송보파인빌7차) (송)전남광양시광양읍와룡길33,706동1003호(광양송보파인빌7차)	진재현	가등기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 대림오성로52,303호
48	여수시 울촌면 반월리	206-3	도	이효*	(등)여천군울촌면반월리155 (송)전남여수시울촌면반월리155			

49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474-1	답	장갑*	(등)여수시울촌면가장리474 (송)전남여수시울촌면송정길36-5			
50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315	중	재단법인대 한예수교장노 회유지재단	(등)전라남도여수시미평동577-3 (송)전남여수시미평동577-3	순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전라남도 순천시 백연길 111 (조례동) (상사지점)
51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727	답	정경*	(등)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복촌1길46 (송)전남여수시소라면복촌1길46			
52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산241-10	임	정명*	(등)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20번길48-24,씨동401호(도농동,원미빌라) (송)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20번길48-24,씨동401호(도농동,원미빌라)			
53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175	임	정민*	(등)서울동작구상도동358-40,102호 (송)서울강서구양천로55길55,103동-704호(가양동,강서한강자이)			
54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727	답	정윤*	(등)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복촌2길11-12 (송)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복촌2길11-12			
55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727	답	정종*	(등)전라남도여수시선원동53급호아파트3-504 (송)전라남도여수시선원동53급호아파트3-504			
56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175	임	정준*	(등)순천시남정동483-7 (송)서울은평구가좌로165,303호(응암동)			
57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355-2	도	조달*	(등)여천군울촌면상봉리12 (송)전남여수시울촌면상봉리12			
58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1432-2	천	지득*	(등)여천군 울촌면 가장리 1339 (송)전남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1339			
59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468-1	도	최병*	(등)충주군해룡면하사리441 (송)전남순천시해룡면하사리441			
60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506-1	답	최정*	(등)경상북도포항시북구양학로34번길14,106동***호(학잠동,대림힐타운) (송)경기평택시서정동265-2외3필지1동104호			
61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506-1	답	한*	(등)부산광역시동구진성로76-1(수정동) (송)부산동구진성로76-1(수정동)			
62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산167-11	임	한순*	(등)서울시강동구명일동15삼익아파트503동****호 (송)경기용인시수지구상현로27,173동-****호(상현동,상현마을쌍용아파트)			
63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산19	임	홍석*	(등)서울시강동구명일동15삼익아파트503동****호 (송)경기용인시수지구상현로27,173동-****호(상현동,상현마을쌍용아파트)			
64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산19	임	홍석*	(등)서울시강동구명일동15삼익아파트503동****호 (송)경기용인시수지구상현로27,173동-****호(상현동,상현마을쌍용아파트)			
65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산19	임	홍석*	(등)서울시강동구명일동15삼익아파트503동****호 (송)경기용인시수지구상현로27,173동-****호(상현동,상현마을쌍용아파트)			
66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산19	임	홍소*	(등)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죽림로10,117동****호(죽림사랑으로부영1차) (송)전남여수시웅천로261,222동****호(웅천동,웅천부영2차아파트)			
67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산19	임	홍수*	(등)부산광역시북구의성로107,703호(덕천동) (송)광주광산구월계로59,208동***호(월계동,첨단호반2차아파트)			
68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산19	임	홍순*	(등)전라남도순천시연향중앙상가길80,101동***호(연향동현대아파트) (송)전라남도순천시연향중앙상가길80,101동***호(연향동현대아파트)			
69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산19	임	홍연*	(등)경기도용인시수지구광교마을로11,4507동***호(상현동 광교마을45단지) (송)경기도용인시수지구광교마을로11,4507동***호(상현동광교마을45단지)			

## 열람공고명세

○ 사업명 : 345kV 신여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일련 번호	수용토지의 표시		보상 대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1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627-17	토지	김순*	(등)여천군소라면덕양리715 (송)전남여천군소라면덕양리1280-5			
2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410-1	토지	최창*	(등)여수시울촌면가장리474 (송)전남여수시울촌면송정길36-5			
3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474-2	토지	장갑*	(등)여수시울촌면가장리474 (송)전남여수시울촌면가장리474			
4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584-2	토지	김성*	(등)순천시대수정41 (송)전남순천시대수정41			
5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623-3	토지	김남*	(등)여수시울촌면가장리1419 (송)전남여수시안산동468-16			
6	여수시 울촌면 산수리	1347	토지	신성*	(등)여수시미평동491귀인아파트2동304호 (송)전남여수시여수산단로1081,203호(월내동,지에스칼텍스사택)			
7	여수시 울촌면 산수리	255	토지	김은*	(등)서울양천구목동713-5외5필지상진오벨리604 (송)서울양천구목동중앙남로3가길127,104호(목동,상진지오벨리)	울촌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지상권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262-2
8	여수시 울촌면 산수리	산216-1	토지	김충*	(등)여수시안산동460-14 (송)전남여수시홍국상가길26-1(신기동)			
9	여수시 울촌면 산수리	산216-1	토지	유창*	(등)순천시연향동1397-5 (송)충남천안시동남구청수8로71,508동901호(청당동,산운마을)			
10	여수시 울촌면 산수리	산216-8	토지	여수*	(송)전남 여수시 학동 100			
11	여수시화장동	172-21	토지	박충*	(등)여천군쌍봉면화장리294 (송)전남여수시쌍봉면화장리294	여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지상권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42
12	여수시화장동	252-2	토지	신동*	(등)여천군쌍봉면화장리294 (송)전남여수시쌍봉면화장리294			
13	여수시화장동	252-2	토지	심금*	(등)여천군소라면덕양리142 (송)전남여수시소라면덕양리142			
14	여수시화장동	254-2	토지	서찬*	(등)전남여천군쌍봉면화양리645 (송)전남여수시쌍봉면화양리645			

## 열람공고명세

○ 사업명 : 154kV 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연번	수용토지의 표시		보상 대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1	여수시 봉계동	41-6	토지	김성*	(등)전남여수시쌍봉로120(학동) (송)전남여수시쌍봉로120(학동)			

## 의견서

① 제 목			
② 수용토지위치			
③ 의견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④ 의견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제출인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p>여수시장 귀하</p>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 여 수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행정처분 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결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एम마트웅천점	정*진	여수시 웅천중앙로 73(웅천동)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18.4.11)
“	장군푸드	김*희	여수시 시전5길 5(신기동)	“	“
“	효실이의하루	최*실	여수시 신기남4길 28(신기동)	“	“

4. 공고기간 : 2018. 4. 12. ~ 2018. 4. 27. (16일간)
5.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처분청 또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여수시청 식품위생과 김승호 (☎ 061- 659- 4232) 끝.

여수시 공고 제2018-926호

## 『2018년 여수시 농·수특산품 해외관측 행사』 참가 희망업체 모집공고

여수시 농·수특산품의 해외 인지도 향상 및 수출확대를 위한 2018년 여수시 농·수특산품 해외관측 행사 참가 희망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18. 4. 12.

### 여 수 시 장

#### □ 행사개요

- 행사명 : 제45회 미국(LA)한인축제
- 행사기간 : 2018. 10. 4. ~ 10. 7.(4일간)
- 행사장소 : 미국LA(서울국제공원)

####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8. 4. 12.(목) ~ 4. 27.(금) / (16일간)
- 참가대상 : 7개 업체
- 참가자격 및 요건
  - 여수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필하고 동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업체
  - 여수시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업체
  - 사업비의 50% 이상의 자기부담 능력을 갖춘 업체
- 우선순위 선정기준
  - 여수시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가공하는 업체로써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원료 사용업체

- 생산 제품의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업체
  - \* HACCP적용업소 인증, 품질인증, 특허등록, 최근 3년이내 전국단위 행사 등에 참여품목 입상경력, 영문 홈페이지 개설 등
- 여수시 주관 해외관측 행사 신규 참가업체로써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659-5846)
  - 주 소 : 여수시 주동 1길 32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서약서, 판매계획서, 생산제품의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문의 : 특산품육성과 (특산품마케팅팀 : 김희재 ☎ 061-659-4503)

○ 선정방법 : 여수시 농·수특산품 해외관측 참가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업체별 판매 중복 해소를 위해 동일품목 참가 배제

○ 대상자 선정통보 : 2018. 5월중 개별통보

○ 기타 참고사항

- 사 업 비 : 110백만원(시비 55, 자부담 55)

※ 총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증액

- 행사내용 : 농·수특산품 홍보 및 판매, 수출 상담 등
- 지원범위 : 항공료, 물류비, 부스 및 장비임차료 등 행사비용의 50% 내외 지원
- 행사개최국 또는 우리시의 여건에 따라 행사참가가 제한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식 2】

**여수시 농·수특산물 해외시장(LA) 판촉행사 참가서약서**

당사는 여수시(이하 “시”) 주관 2018년 해외시장 판촉행사 참가 희망업체로써 아래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착오없이 사업을 이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2018년 해외시장(LA) 판촉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수시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2. 여수시 해외 판촉행사 참가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3. 참가 품목에 관련하여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 및 제품하자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당사는 아래와 같은 당사의 불성실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시의 제재조치(향후 2년간 해외 판촉행사 참가신청 제한)도 감수한다.

《 아 래 》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업체
-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박람회(또는 전시회)에서 직매를 강행한 업체
-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사용한 업체
- 상도(商道)의 도리를 저버리거나 타 참가업체와 마찰을 유발하는 업체
-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여 참가기업을 선동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 성과를 저해한 업체
- 기타 참가 기업으로써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행위를 한 업체

2018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4】

해외 수출 실적

1. 신청자 인적사항 (2018년 4 월 일 기준)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2. 해외 수출 실적(2015년 ~ 현재)

년도	수출 국가명	품 목	금 액(\$)	비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수출증명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나 한국무역협회 발행 증명서 첨부

【서식 5】

해외 판촉행사 참가실적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2. 해외 판촉행사 참가실적(2012년 ~ 현재)

참가 년도	참여 행사명	기 간	참가국명	참가품목	판매금액	참가비용 (천원)	보조유무 (국비, 지방비)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업체명:

대표자:

(인)

## 공 고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미리 알려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자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18. 4. 12. ~ 4. 27.(15일간)
2. 모집인원 : 11명 이내
3. 위원역할 : 다음 사항을 심의함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자격요건
  -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조직의 대표로 있는 자
  -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대기업 등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로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5.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6. 선정방법 :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
7. 선정기준
  - 사회적경제 관련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8. 대상자 선정 통보 : 2018. 5. 3.한(개별통보)
9. 접수장소 :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우편번호 59715
10.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061-659-5819),  
전자우편(alvud@korea.kr)
11. 제출서류 :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 신청서  
및 자필 이력서 각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명서류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12. 기타 참고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만 유효하며, 위원  
위촉 후 중요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등)에 의  
거 공고일 현재 여수시 운영 3개 위원회 위촉자는 제외됩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일자리정책관실 (☎ 061-659-3597)로 문의 바랍니다.



사 진	이 력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등록기준지		
주 소		
년 월 일	학 력 사 항	학 교 명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기 관 명
년 월 일	포 상 및 형 별 사 항	기 관 명

이력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8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나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업체의 요청이 있어 변경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행정처분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처분사유	처분내용		변경 사유	비고
			당 초	변 경		
(주)진우건설 이기연	석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2017년 실태조사 보고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영업정지1개월	과징금2천만원	업체 요청	

2. 공고 기간 : 2018. 4.12. ~ 4.27.(15일)

3.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http://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권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 여수시 공고 제2018-936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에 따라 행정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 여 수 시 장

###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예 정 된 행정처분	청문일시	처분 법적근거 및 사유
카라건설 (윤윤정)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동문안길 3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018. 5. 8.(화) 16: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2. 공고기간 : 2018.4.12. ~ 4.27.(15일간)

3.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시보

5.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른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 여수시 회계과(☎061-659-3176)

# 2018년도 광림동 복지코디네이터 채용 공고

2018년도 광림동 복지코디네이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광 림 동 장

## 1 모집분야

가. 채용인원 : 1명

나. 모집분야

모집분야	채용인원	비 고
복지코디네이터	1명	2018년 사업추진에 따른 모집

## 2 근로조건

가. 계약기간 : 2018. 4. ~ 2018. 12.

나.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직 종 : 비정규직 상근직

라. 근무장소 : 광림동주민센터

마. 근무시간 : 주 5일 / 1일 4시간

바. 보수수준 : 7,530원/시급(법정 최저임금), 교통비(근무일 3,000원), 주·월차수당, 4대보험 가입

사. 업무내용 : 복지사각지대 현황 확인, 자원 발굴 및 전달

### 3 채용방법

가. 전형방법

- 제1차 : 서류 심사
- 제2차 : 면접시험(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나. 원서접수

- 기 간 : 2018. 4. 16.(월) ~ 2018. 4. 20.(금) / 5일간(09:00~18:00)

다. 접수처 : 광림동주민센터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및 대리접수 불가)

### 4 응시자격

가. 응시 연령 : 20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나. 성별 및 거주지 : 성별 제한 없으며,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자

다. 응시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관련 업무 종사자 우선 선발
- 50세~65세 미만(중·장년층 1968. 12. 31. 이전 출생자) 우선 선발
-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각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기재),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서(동의서) 1부

## 6

##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림동주민센터(061-659-1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응 시 원 서

본인은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채용에 응시 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인)

(사 진)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합판 (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 2매	응 시 분 야				※응시번호	2018-
	성      명	(한글)	연락처	자    택    :		
		(한문)		휴대폰    :		
		(영문)		이메일    :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우   -   )					
학    력	고등학교	년   월	고등학교	(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교이하	년   월	대학교      학과	(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    학    원	년   월	대학교    대학원    전공	(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근무기간		기관명	직    위	담당업무	
총 경력 (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격증소지사항						
기타참고사항						

※ 응시번호	2018-	<b>응    시    표</b>				사    진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채용시험				
응시분야	광림동 복지코디네이터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응시직위	기간제근로자	2018년      월      일				
		<b>광    림    동    장</b>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지원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고, 응시원서 작성시 지원자 부주의로 인해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지원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고, 전화번호는 현재 연락 가능한 곳을 기재합니다.
2. 최 종 학 력 : 대학교 이하란은 응시자 모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학위 등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경력 및 자격 : 사회의 실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되 근무 관서명 및 직급을 기재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4.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2018. 1. 00. 기준으로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5. “※” 표 시 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붙임 2】

##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응시동기 :

○ 자기소개(구체적으로 작성) :

○ 기타 (특기사항) :

2018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 또는 자유롭게 기술하되, 가족사항,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 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이 력 서

(앞면)

<input type="checkbox"/> 개인 신상					<b>사 진</b>	
성 명	한글		생년월일	(만 세)		
	한자		주민등록			
	영문		번호			
현 주소						
현 소속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병 역	군필여부	<input type="checkbox"/> 필 <input type="checkbox"/> 미필	기 타 사 항			
	최종계급					
<input type="checkbox"/> 학력 및 경력						
구 분	내 용		학교명(회사명)	전공 (담당업무)	학위(직위)	
	입학 (입사)년도	졸업 (퇴사)년도				
학력 및 전공						
주요경력						
논문, 저술, 수상실적 등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 사항		
구 분	내 용	
응시 분야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동기		
<input type="checkbox"/>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자 격 증	종 류	등 록 번 호
보유 자격 또는 기술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8 년 월 일

응시자 (인)

광림동장 귀하



**【붙임 5】**

[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 등록번호를 기입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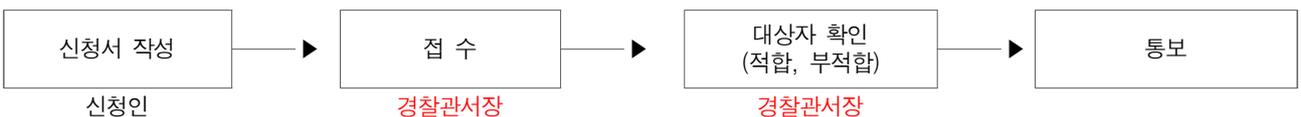
**여 수 경 찰 서 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 또는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광림동 복지코디네이터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경 찰 서 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2 일

여 수 시 장

정영민



여수시 조례 제1329호

붙임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일자리정책관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안전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아목 중 “여수시 도시공사”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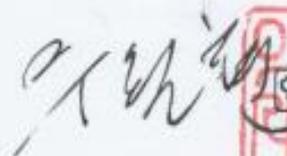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2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30호

붙임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여수시 조례 제1330호

##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제15조 중 “10”을 “20”으로 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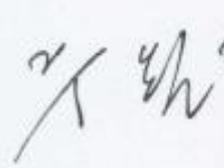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2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31호

붙임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여수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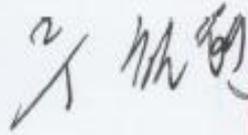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한국전쟁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2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32호

붙임 여수시 한국전쟁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지역민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지역민 희생자”(이하 “지역민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 전쟁 전후 희생된 지역민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지역민 희생자가 여수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시장이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수시 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2. 지역민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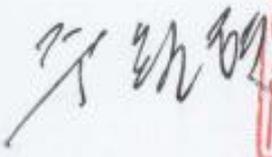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33호

붙임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카약, dinghy, 스노쿨링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

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중레저활동

2. “체험장”이란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수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설)**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샤워장
2. 물품 보관소
3.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비(이하 “체험장비”라 한다) 대여소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체험장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체험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응천친수공원
2. 소호요트마리나
3. 여수세계박람회장
4. 만성리해수욕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체험장에는 체험·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체험장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안전점검, 시설물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징수)** 시장은 체험장 시설물과 체험 장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체험장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장 또는 여수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제8조(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이용자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일 하루 전에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중 또는 그 이후에 환불을 요구

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9조(입장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타인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한 사람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②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시장은 일반인의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취소 또는 중지)**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 이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체험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이용 규칙 또는 제14조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9조의 입장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체험장 임시폐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체험장의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 및 폐쇄기간을 고지해야 한다.

1. 체험장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체험장이 안전에 취약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험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 활용실태 등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체험장 및 그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체험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정기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및 사고 시의 조치요령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체험장에서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하려는 경우 안전요원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5조(관리·운영위탁)** ① 시장은 해양레저스포츠 유료 체험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체험장 운영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사무를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험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험장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험장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위탁계약서 및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관리·운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험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성 인	일 반	5,000	체험 및 시설이용
	여수시민	2,000	
청소년	일 반	3,000	
	여수시민	1,000	

[비 고]

1.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7세 미만인 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2일

여수시장



여수시 조례 제1334호

붙임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우 야간(하계의 경우 19:00~23:00, 동계의 경우 18:00~22:00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료는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1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발행하는 경우로서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초대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7호에 따른 사용료 감경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를 “(체육지도자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회체육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 현황(제2조 관련)

명 칭	세 부 시 설	소재지
진 남 체 육 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남경기장</li> <li>· 진남체육관</li> <li>· 야구장</li> <li>· 실내야구연습장</li> <li>· 인라인롤러경기장</li> <li>· 씨름장</li> <li>· 유도장</li> <li>· 테니스장</li> <li>· 실내테니스장</li> <li>· 국궁장</li> <li>· 보조운동장</li> <li>· 족구장</li> <li>· 게이트볼장</li> </ul>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망 마 경 기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경기장</li> <li>· 준비운동장</li> <li>· 국궁장</li> <li>· 게이트볼장</li> <li>· 국민체육센터</li> <li>- 실내수영장</li> <li>- 다목적체육관</li> </ul>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진 남 수 영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수영장</li> <li>· 다목적실</li> <li>· 복합구장</li> </ul>	오림동 661
여수시장애인국민체 육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목적체육관</li> <li>· 체력측정실</li> <li>· 체력단련실</li> <li>· 장애인목욕탕</li> </ul>	오림동 102
홍 국 체 육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국체육관</li> </ul>	선소로 93(학동)
돌 산 체 육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산체육관</li> </ul>	돌산읍 강남로 18
시 립 테 니 스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테니스장</li> </ul>	시청로 1(학동)
이순신공원테니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순신공원테니스장</li> </ul>	웅천동 이순신공원 일대
진 모 축 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모축구장</li> </ul>	돌산읍 강남해안로 196

[별표 2]

일반사용료(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구분	개 인			단 체			비고
			어른	청소년, 군 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경로 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어른	청소년, 군 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경로 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주경기장	천연	50,000	40,000	면제			면제	구장당	
	보조	40,000	35,000	"				"	
보조구장	천연	30,000	25,000	"				"	
	보조	25,000	20,000	"				구장당 (복합구장 포함)	
체 육 관		1,500	1,000	"	1,000	700	"	1인당 (다목적 체육관 포함)	
야구경기장		30,000	20,000	"				구장당	
실내야구연습장		20,000	20,000	"				실내사용기준	
인라인롤러경기장		1,500	1,000	"	1,000	700	"	1인당	
테니스장 (1면당)	실외천연코트	10,000	6,000	"				1면당	
	실외하드코트	10,000	6,000	"				"	
	실내하드코트	15,000	10,000	7,500				"	
족 구 장		10,000	7,000	면제				"	
게이트볼장		10,000	7,000	"				"	
유 도 장		10,000	7,000	"				"	
씨 림 장		10,000	7,000	"				"	
국 궁 장		1,500	1,000	"	1,000	700	"	1인당	
장애인 국민체육 센터	체력측정실			면제			면제	장애인에 한함	
	체력단련실			면제			면제	"	
	장애인목욕탕			2000			2000	"	
수영장	회원권(월)	60,000	45,000	30,000				강습료 : 10,000	
	1회사용	4,000	2,500	1,500	3,000	1,500	800		

## 비고

1. 사용시간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하며,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부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야간(하계의 경우 19:00~23:00, 동계의 경우 18:00~22:00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료는 위 사용료의 150%로 한다. 단, 테니스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여수시체육회 또는 여수시장에인체육회에서 통보한 여수시 대표선수
  - 나. 각급 학교의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
  - 다. 프로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단, 그 밖의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전지훈련의 경우에 한한다)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소년소녀가장
4. 수영장
  - 가.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요금의 15%를 감경한다.
  - 나. 수영장 내 헬스장 사용료 및 에어로빅·요가 강습료는 각 월 35,000원으로 하며, 수영을 포함하여 2가지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각 사용료 또는 강습료의 15%를 감경한 80,000원을 징수한다.
5. 테니스장
  - 가. 테니스장(실외코트에 한한다)의 월 회원권 요금은 어른 40,000원, 청소년·군인 30,000원으로 한다. 단, 테니스 강습을 받는 사람의 경우의 월 회원권 요금은 어른 월 60,000원, 어른 외 월 48,000원으로 한다.
  - 나. 테니스 강습료는 어른 월 90,000원, 어른 외 월 72,000원으로 한다.
6.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가. 여수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단 다목적체육관은 일반인 이용 가능)
  - 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영유아는 장애인목욕탕 이용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다. 장애인목욕탕 중 가족탕은 1~3급 중증장애인과 4~5급 하지절단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동반가족 1인을 포함하여 사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단, 장애인이 감면대상자일 경우 가족도 감면대상자에 포함한다.)
7. 구분
  - 가.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13세 미만, “영유아”란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경로우대자”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단,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본다.
  - 나.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복무 중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 다. “단체”란 1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별표 4]

### 행사사용료(제6조제2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구분	체 육 행 사		일 반 행 사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주 경 기 장	육상장(트랙)		50,000	75,000	100,000	150,000	
	축구장 (필드)	천연	100,000	150,000	200,000	300,000	구장당
		인조	80,000	120,000	160,000	240,000	“
보조구장		천연	60,000	90,000	120,000	180,000	“
		인조	50,000	75,000	100,000	150,000	구장당 (복합구장 포함)
실 내 체 육 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다목적 체육관 포함
야 구 경 기 장			60,000	90,000	-	-	구장당
실내야구연습장			40,000	60,000	-	-	“
인라인롤러경기장			60,000	90,000	-	-	“
테니스장	실외천연코트		20,000	30,000	-	-	1면당
	실외하드코트		20,000	30,000	-	-	“
	실내하드코트		30,000	40,000	-	-	“
족 구 장			20,000	30,000	-	-	“
게 이 트 볼 장			20,000	30,000	-	-	“
유 도 장			40,000	60,000	-	-	구장당
씨 림 장			40,000	60,000	-	-	“
국 궁 장			40,000	60,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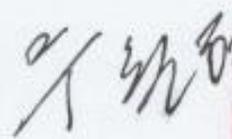
비고

1. 사용시간 : 기본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단,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초과 시간 1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2. 야간의 사용료는 위 사용료의 150%로 한다.
3. 행사 참여인원(선수 및 사용자 측의 참여인원 등 행사 개최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 가. 행사 참여인원이 100~499명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30%
  - 나. 행사 참여인원이 500~999명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50%
  - 다. 행사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70%
4. “체육행사”란 체육경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사를 말하며, “일반행사”란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2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35호

붙임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품질·위생·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상호, 위치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인증서 교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공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의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지원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사평가단 및 제9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위생·친절도 점검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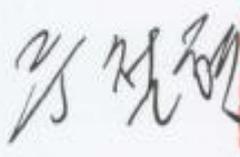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만 연안 보전  
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2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36호

붙임 여수만 연안 보전 이용 및 관리 조례안 1부.

##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만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수만”이라 함은 여수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5개 만으로 여자만, 가막만, 장수만, 광양만, 여수해만을 말한다.

2. “여수만 연안 지역”이라 함은 여수만에 연계되어 있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가.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바닷가와 바다를 말한다.

나. “연안육역”이란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과 인접해 있는 읍면동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육지 지역으로서 제3조에 따른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 시장은 여수만의 보전·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수만의 가치 증대·창출을 위한 행사 또는 사업

2. 여수만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과 연안환경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제5조(협력 등)** ① 시장은 여수만과 여수만 연안 지역의 보전·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전라남도 및 접경지역의 시·군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양환경단체 등 민간단체와 국내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연안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활동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2 일

여 수 시 장

정광현 인 

여수시 조례 제1337호

붙임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부.

## 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수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육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여성인 자를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여성인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가정”이란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어업인(이하 “여성농어업인”이라 한다)이 구성원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농어업인과 그 가정 및 관내에 위치한 여성농어업인단체(이하 “여성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농·어업의 발전과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장 여성농어업인등 지원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등과 관련된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농어업인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육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기술·교육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농어업인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의 예산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진 농어업기술 도입에 있어 자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등을 육성하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시장은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 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지원)**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전문기술을 향상하고 농어업 경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과 관련된 순회교육 또는 현장교육

2. 여성농어업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공동교육

3.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기타 농어업 관련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농어업인의 교육전문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가정에 농어업기술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귀농·귀촌·귀어 및 이민 여성농어업인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귀어

및 이민 여성농어업인(이하 “귀농여성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교육기회와 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여성농어업인등의 현황 및 실태 파악
2. 귀농여성농어업인등의 상담 및 화합행사 지원
3. 귀농여성농어업인등의 농어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및 문화교육
4. 귀농여성농어업인등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융자금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기타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개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또는 보조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 받은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 받은 금액을 유용한 경우
3. 보조 또는 융자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제3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11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과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장 여수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

**제12조(설치)**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정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시책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등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어업인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여성농어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3. 농업기술센터소장
4. 경제해양수산물국장
5. 농업정책 담당부서의 과장
6. 수산경영 담당부서의 과장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전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 제4장 보칙

**제19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복지향상)** ①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복지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여성농어업인 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여성농어업인 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및 방과 후 교육 지원
4. 출산 전·후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여성농업인등 협조)** 여성농어업인등은 농업과 어업을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농어촌의 건전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가정 구성원이 평등하게 농어업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가정에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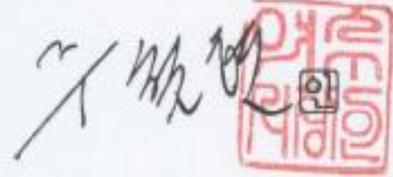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2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38호

붙임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여수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외의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녹색제품으로 본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 I 등급으로 지정된

제품, 같은 법 제18조제4호의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 대상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5. 제6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녹색제품 판단기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보는 품목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 ①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 촉진

**제5조(자금 및 용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여수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용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시장은 여수시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단체가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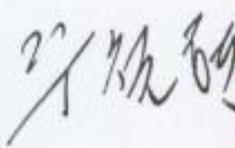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4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339호

붙임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및 「진로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창의·인성·진로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겸비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학생이 자신의 내·외면을 바르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을 말한다.

4.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일깨우고 직업세계를 이해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를 슬기롭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진로교육(이하 “창의교육 등”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교육 등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의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진로·진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교육청이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협력·지원
5. 지역사회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8.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9.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
10. 교육지원 정책의 조사·연구·개발 및 평가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차별금지)** 시장은 출신국가·종교·사회적 신분·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학생 및 그 부모가 제4조 각 호의 사업 및 창의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장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설치)**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가한 사람(이하 ‘수강자 등’이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수강료의 면제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층 가정의 구성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시장이 수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강료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센터 운영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수강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수강자 등이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사유로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장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시장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인력 및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수시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여수교육지원청 교육담당부서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3. 교육관련 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학생

5. 그 밖에 교육분야 전문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수시 교육지원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업무 담당국장 및 여수교육지원청 교육담당부서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장 보칙

**제17조(운영실적 제출)** 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매년 분기별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지원센터에서 수강신청을 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수강료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대상	금액	비고
월	10시간 미만 프로그램	10,000원	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 부담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프로그램	20,000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프로그램	30,000원	
	30시간 이상 프로그램	40,000원	

2018년 제3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2 일

여 수 시 장

김복현



여수시 규칙 제683호

붙임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사무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세외수입 주관과장, 관서의 장”을 “세입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없다”를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투자사업”을 “재정 투자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실.”를 “담당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정과장, 징수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로, “통합지출관, 본청”을 “본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발급하거나”를 “발하거나”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제3호 중 “채권지”를 “채권자”로 한다.

제50조의4의 제목 “(통합지출관의 의무)”를 “(통합지출관의 임무)”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행할”을 “발하러 할”로 한다.

제55조제4항 단서 중 “과년도”를 “지난 회계연도”로 한다.

제63조제1항 후단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 중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 중 “공급”을 “공금”으로 한다.

제98조 중 “제96조”를 “제95조”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5호 중 “때”를 “때(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않음)”로 한다.

제120조제2항 중 “도지사”를 “시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2조제1항 중 “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과장”을 “행정안전국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1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제15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53조 중 “발행”을 “발생”으로 한다.

제15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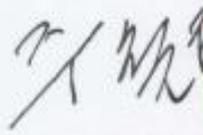
##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년 제4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2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칙 제684호

붙임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여수시 규칙 제684호

##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